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993
결재일자	2015. 12. 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 당	민방위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조보금	장성태	박성도	손정수	12/03 김병환
협 조				

2016년도 성북구 민방위계획

2015. 12.

성 북 구

I . 민방위계획 개요

1. 성 격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계획

※ 제8차 민방위기본계획(2012~2016)의 제5차년도 민방위계획

2. 근 거

『민방위기본법』 제14조¹⁾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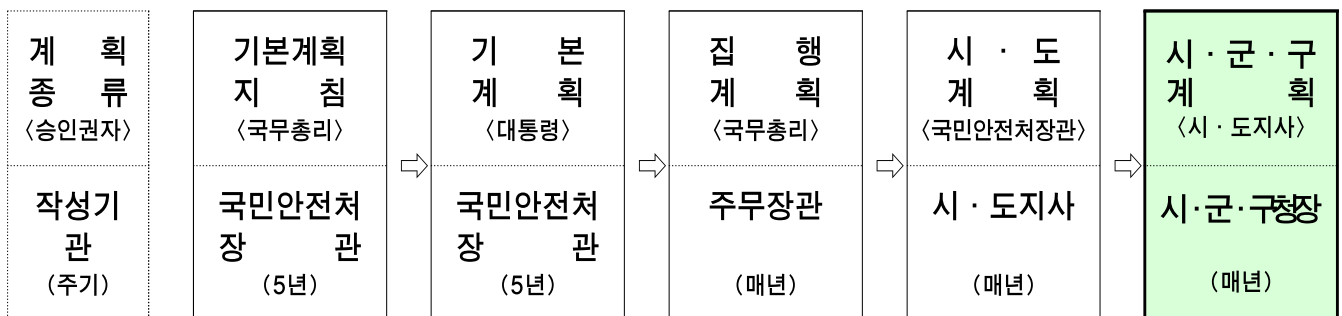
3. 작성내용

가. 「제8차 민방위기본계획」에 근거한 집행계획 및 서울시계획에 의해 작성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²⁾에 따라 구 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봄

나. 민방위 편성, 교육, 훈련, 시설·장비, 경보발령, 화생방 등 민방위 운영 분야

4. 수립절차



1) 민방위기본법 제14조(시·군·구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달받은 시·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Ⅱ. 민방위 여건 및 전망

1. 안보환경

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의 포격 도발 등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의 상시적 불안정 및 주민보호강화 필요

- (1) 장기대피 상황에 대비한 대피소 구축 및 내부 편의시설 완비, 전담 업무담당자 지정 필요
- (2) 대피시설 점검을 통해 유사시 대피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보완대책 마련 시급

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핵위협 등으로 인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 (1) 北 미사일 사정거리 범위 내 이미 한반도 전역이 포함되어 있어 주민대피시설의 방호 및 운영 한계

※ 미사일 및 장사정포의 5~20% 화학탄 배치로 고폭탄 위주 단순대피 개념으로는 초기생존성 보장 곤란

- (2) 핵(플루토늄 40kg) 및 화생방무기(화학무기 2,500~5,000톤, 생물무기 탄저균 등 13종) 위협이 현실화

※ 한국은 전세계에서 화생방 및 핵무기 공격을 당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 (미 국방부, '07년 화생무기 방어계획 연례보고서)

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통과에 따른 동북아 정세변화 등이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인식

2. 재난안전환경

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빈발, 세계화·도시화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신종질병(에볼라, 메르스 등)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비 및 통합적 대응체계 확립 필요

나. 세월호 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과 같은 대형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 절실

다. 편의시설 노후화, 고령화, 레저활동 증가 등에 따른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증대로 국민의 재난안전 의식제고 필요

3. 민방위 인식의 변화

가. “국민안전처” 출범(‘14.11.19)으로 민방위 사태의 통합관리

- (1) 비상대비, 재난 및 안전 분야를 국민안전처장관 아래로 통합
- (2) 민방위 제도(민방위기본법)와 집행업무를 통합

나. 민방위 대비태세 강화 의원입법 추진 등 정치권의 관심 급증

- (1) 국민에 대한 민방위 재난안전교육 교육훈련 실시(‘15.1.8 원혜영)
- (2)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운영 및 운영 지원(‘15.5.17 강기윤)
- (3)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포지판 등 설치책임 강화(‘15.1.29 정호준)
- (4) 방송사에 대한 민방위 훈련홍보 협조의무 부여(입안 중, 진영)
- (5) 민방위훈련 중 부상이나 사망시 보상근거 신설(입안 중, 진영)
- (6) 민방위대원 교육 식비·교통비 지급 및 요금 감면(입안 중, 신계륜)

다. 민방위대 창설 제40주년을 맞아 민방위 미래 비전 제시

- (1) 官주도 민방위 체제에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民주도 국민 참여 민방위 개념으로 발전
 - ※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원민방위대 역할 확대
- (2) 국민의 안보·안전 불안 해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한 민방위 위상 제고
 - ※ 미래형 신종재난(메르스 사태 등)에 대한 국민보호 역량 강화
- (3) 민방위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제도보완과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보호 활동 강화
 - ※ 생애주기별 재난안전체계와 통합된 민방위 교육 제공

라. 북 포격도발(8.20) 이후 민방위 주민보호 시스템의 중요성 대두

- 북 포격도발로 주민 실제대피 시(8.20~8.25) 대피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안전 위협상황 및 시설 유지관리 미흡에 따른 주민불편 실감

Ⅲ. 민방위 운영

1. 민방위훈련 실효성 강화

《 개 요 》

- 훈련목표 :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안보와 시민안전 확보

- 훈련중점
 - 국가안보와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훈련참여 향상
 - 안보·안전에 대한 국민의 자기책임 의식 제고 및 가족단위 비상대응능력 강화
 - 주민·대원 중심의 실습체험위주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역량 강화

훈련규모	훈련과제	훈련횟수	훈련시기	훈련주관
계		8회		
전 국	▫ 민방공훈련	1회	8월 (을지연습 연계)	국민안전처
	▫ 재난대비훈련	1회	5월 (안전한국훈련 연계)	
서울시	▫ 직장대방호훈련	2회	자율결정	시
성북구	▫ 지역·직장특성화훈련	4회		구 (민방위대·지역주민)

※ 안보환경 및 재난안전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인 훈련횟수·내용 조정

가. 안보상황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민방공훈련 실시

(1) 최근 안보상황과 변화된 적 공격양상을 반영

- (가) 국지도발 대비 실제 주민대피훈련
- (나) 도시지역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

(2) 국민의 초동대처요령 학습에 중점

- (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
- (나) 방독면 착용 및 심폐소생술, 소화기 작동요령 등 생활안전교육 강화

나. 재난여건 및 지역·직장특성에 맞는 재난맞춤형 훈련 강화

(1) 지역별 재난발생빈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복합재난 훈련 실시

- (가) 주택 및 상가지역 : 화재, 가스폭발, 침수, 누전, 노후건물 붕괴 등
- (나) 산업시설밀집지역 : 유독가스 누출, 테러, 대규모 단전·단수 등

(2) 직장·건물 특성에 맞는 실습·체험형 훈련 실시

※ 동원업체 방호훈련, 고층건물 화재대피 비상탈출훈련 등

다. 지역 및 주민의 초동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실습·체험형 훈련 강화

(1) 주민·민방위대원 중심의 훈련, 지자체는 지원

(2) 주변 위험지역 사전예찰 등 생활민방위 훈련 실시

라. 초·중·고 학생 및 학교단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한 민방위훈련 강화

(1) 학사일정에 민방위훈련 일정 반영으로 훈련 의무화

(2) 흥미유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마. 가족단위 비상대응 능력 확대를 위한 민방위훈련 추진 개선

(1) 아파트지역, 가족단위 대피훈련 실시

(2) 가족 1인 이상 생활안전요원화 추진

바. 자발적 훈련참여 및 민방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1) TV 및 라디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 홍보 강화

(2) 훈련분위기 조성을 위한 훈련실황 중계

(3) TV스팟, UCC, SNS 등 뉴미디어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

(4) 훈련이해 및 필요성 등 흥미있는 콘텐츠 제작 홍보 추진 등

2. 민방위 조직역량 강화 및 교육운영 개선

《 개 요 》

- 추진목표 : 현장에 강한 민방위대 육성

- 중점사항
 - [편제] 지역특성과 재난여건에 맞는 편제운영
 제대별 임무·역할 명확화
 전·평시 지휘·통제 가능한 편제 구성
 - [조직] 조직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예 민방위대 육성
 ※ 지역대 : 전시대비조직, 지원대 : 전·평시 현장조직으로 운영
 - [교육] 민방위 대비역량 제고
 국가관·안보관 및 자기책무 확립

[2015. 10. 31. 기준]

편성·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40세, 30,556명 ▫ 대장·부대장·분대로 편제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대 : 461대 29,453명 ▫ 직장대 : 87대 904명 ▫ 기술대 : 1대 112명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대원 및 주민 ▫ 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차 : 4시간 - 5년차이상 : 1시간 ▫ 안보 및 재난안전, 체험위주 교육

가. 걱정안 민방위자원 편성

(1) 민방위자원 편제·운영

- (가) 지역특성을 감안한 편제(획일적 분대편제 지양)
- (나) 지역별 안보여건, 재난빈도 등을 감안한 편제 운영
- (다) 편성자원 및 편제규모의 적정성 확보(1개대 20명정도)
- (라) 신규편성 대상자 및 누락자원 확인 등 대원 명부관리 철저

(2) 민방위대 편성현황

[단위 : 명, 2015. 10. 31.기준]

구 분	총 계		지 역 대		기술지원대		직 장 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총 계	549	30,556	461	29,453	1	112	87	904

나. 민방위대 조직역량 강화

(1)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

- (가) 대장 및 부대장, 분대장 중심의 지역민방위대 운영
 - ※ 임무카드 작성·관리, 행동매뉴얼 보급, 비상연락체계 정비 등 응원체계 확립
- (나) 제대별, 개인별 임무·역할 명확화, 비상연락체계 구축
 - ※ 불시통신응소훈련 실시, 연1회
- (다) 직장민방위대장 지휘역량 강화 및 직장민방위대와 지역민방위대간 방호 지원 협력체계 구축

(2)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정예 민방위대 육성

- (가) 기술지원대 자원편성 요건 강화
 - ※ 자격+장비보유자, 전문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필요시 MOU 체결)
- (나) 기술지원대 사무공간 확보 추진
- (다) 여성민방위대 등 지원민방위대 전국 연합체 구성 준비
- (라) 동 기동타격대 운영 검토(실비보상)

다. 민방위 대비역량 제고 및 국가관·안보관 확립

(1) 민방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실용성 강화

(가) 체험·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확대를 위하여 서울시민방위교육장 활용

※ 서울시민방위교육장(석관동 소재) : 250명/회 수용

- 건물 5개동 중 2개동에서 체험·실습

- 화재(소화기 사용방법), 응급처치(심폐소생술), 화생방(방독면),
지진체험, 풍수해체험, 교통안전체험, 탈출 등

(나) 민방위강사 공개검증 확대 및 교육 매뉴얼 개발

(다) 대원 임무별 숙달교육 및 국가관·안보관 등 리더십교육 강화

(2) 민방위 교육부담 경감 및 사이버교육 확대(국민안전처 추진)

(가) 5년차 이상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확대(단, 필요시 소집교육)

(나) 1~4년차 대원의 사이버 사전평가제 시범운영

※ 사이버 상 기본소양교육 이수, 소집교육 시 실기위주교육 실시

(다) 교육 출결관리 철저 및 불참자 법적조치 강화

(3) 국민 재난안전교육 강화(국민안전처 추진)

(가) 민방위 체험·실기교육장 개방 및 전문강사 확보

(나) 체험·실기교육장 확충에 따른 시설관리 및 운영인력 보강추진

3. 민방위 시설 · 장비 확충 · 관리

《 개 요 》

-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확보
 - 현 황 : 120개소, 1,897,450 m^2 확보(소요량 대비 506.78% 수준)
 - ※ 소요량 : 374,410 m^2 [주민 453,830명 대상, 4인 3.3 m^2 기준]

- 민방위사태 발생 시 최소한의 급수량 확보
 - 현 황 : 53개소, 6,673톤 확보(소요량 대비 59% 수준)
 - ※ 소요량 : 11,347톤 [주민 453,830명 대상, 1일 25 l /1인 기준]

-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한 민방위장비 운영 효율화
 - 현 황 : 6종 2,048점 확보(소요량 대비 128.5% 수준)
 - ※ 민방위장비(6종) :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가. 주민대피시설 확보 및 운영관리 강화

(1) 주민대피시설 확보현황

[단위 : 개소 / m^2 / 명, 2015. 10. 31.기준]

인구	소요량	확보량			정부지원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개소	m^2	확보율(%)	개소	m^2	개소	m^2
453,830	374,410	120	1,897,450	506.78	-	-	120	1,897,450

(2) 공공용 대피시설 운영관리 강화

(가) 「공공용 대피시설」 정의 개선

- 일반지하시설 중 다수 주민의 단기적(5시간 이내) 집단방호, 라디오청취, 주·부 출입구 보유 등 비상대피기능을 갖춘 바닥면적 60㎡이상의 지하시설 또는 구조물

※ 미국 FEMA의 SIP(Shelter In Place), 「건물 내 대피시설」 개념 적용

(나) 양적 확보위주 탈피, 비상시 실제 활용가능한 시설 확보

- 1) 지역별 대피능력 감안, 공공 및 민간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2개 이상 출입구(주·부 출입구 보유)가 있는 시설로 지정
- 2) 음식점 등 소규모시설 및 야간영업으로 주간 미개방시설은 지정해제
- 3) 대피시설 개방조치(시설입구 적재물 해소, 출입문 개방조치 등)

(3) 신속한 대피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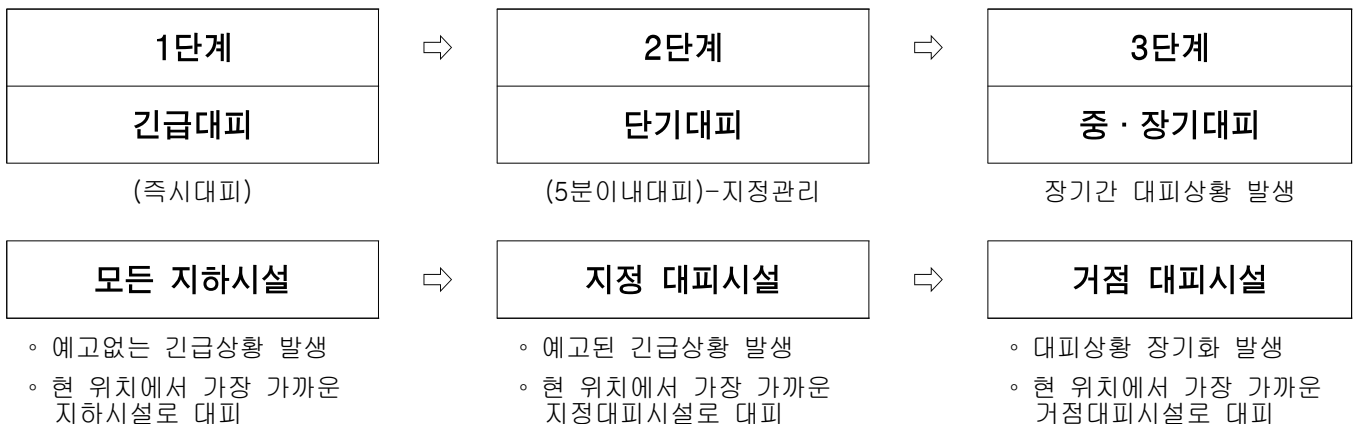
(가) 동 단위 구역별 비상대피계획 수립

- 1) 시설수, 대피인원, 대피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가능토록 수립
- 2) 시설별 운영관리 및 대피유도요원 지정·운영 철저

(나) 비상대피계획 실제 적용훈련 실시

- 1) 민방위훈련 시 주민, 시설주, 민방위대원이 참여하여 실제대피훈련 실시
- 2) 구보, 게시판(동 주민센터, 아파트관리소 등) 홍보물 게시 등 비상대피 시설(위치정보 포함) 주민홍보 강화

참 고 단계별 대피체계



나.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개선

(1) 비상급수시설 확보현황

[단위 : 개소 / 톤 / 명, 2015. 10. 31.기준]

인구	소요량	확보량			정부지원시설		지자체지원시설		공공용지정시설	
		개소	톤수	확보율(%)	개소	톤수	개소	톤수	개소	톤수
453,830	11,347	53	6,673	59	7	1,163	-	-	46	5,510

(2) 상시 안정적인 비상급수대책 확보

(가) 비상급수시설 기능 상시유지

- 고장 발견 시 신속정비
- 지정시설 부적합판단 시 개선 권장
- 필요 시 급수차량 지원 등 비상 시 신속한 급수공급대책 마련

(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주민들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적극 개방·운영

(3) 시설관리 및 수질개선 지속 추진

(가)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 정(동장), 부(동 민방위담당)

- 시설물 정기(개방시설 월 1회, 미개방시설 분기 1회) 점검
- 부대시설 작동여부 확인, 모터펌프 월 1회 이상(최소 15분간) 작동 등 실시

(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

-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수질검사 실적서 계첨
- 식수허용기준 초과 시 정수기 및 소독기 설치, 배관교체 등 조치

(4)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증대를 위한 조치(요청)

(가) 비상발전기 등 핵심 노후시설 정비·지원방안 마련

(나) 비상급수 지정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요청 등

다. 민방위장비 확보·활용 및 유지관리

(1) 민방위장비 확보현황

[단위 : 점, 2015. 10. 31.기준]

계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소요량	확보량	확보율(%)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1,593	2,048	128.5	378	467	88	74	259	346
			환자용들것		휴대용조명등		교통신호봉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소요량	확보량
			204	227	430	453	234	481

(2) 민방위장비 운영 매뉴얼 보완·정비

(가) 민방위장비 관리 전산화(서울행정시스템 상 장비현황 입력 철저)

※ 효율적인 현황관리 및 실시간 통계자료로 활용

통계현황을 참고하여 응원물자 지원 등 민방위장비의 효율적 운용 확보

(나) 과부족 일제조사로 체계적인 소요량 확보대책 수립·시행

(3) 민방위장비 관리 및 운용

(가) 민방위장비 주기적 점검·정비로 최적 사용가능상태 유지

(나) 민방위장비 (가능한) 전용창고 확보 및 관리방법 개선 추진

1) 보관 여건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관리

가) 보관장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컨테이너박스 제작, 전용창고로 활용

나) 인구·면적이 좁은 지역은 통합보관, 넓은 지역은 권역별보관

2) 장비현황관 부착, 기록 : 장비명, 규격, 수량 등

※ 작동불량으로 수리 또는 폐기대상 장비는 비고란에 수량 표시

3) 관리책임자 지정, 장비 유지관리 철저

가) 관리책임자 : 정(동장), 부(동 민방위담당)

나) 분기 1회이상 장비 수량 및 상태점검, 점검일지 기록유지

4. 화생방 방호체계 확립

《 개 요 》

○ 민방위 화생방 기술지원대 현황 : 1개대 17명

○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현황

[단위 : 점, 2015. 10. 31.기준]

구 분	목 표 량	보급현황	보 급 율(%)
방 독 면	30,556	5,853	19.1
분대장비	[7종] 31	277	893.5%

가. 민방위대 화생방 방호조직 편성 및 임무

※ 지역·직장 내 화생방 관련 기술자격자 중심으로 기술지원대 편성

(1) 편 성

(가) 기술지원대 : 1개대 17명

(나) 직장민방위대 : 100명 이상 직장대 의무편성

※ 1~4년차 위주로 화생방분대 구성, [탐지4 : 제독6](10명 기준) 편성

(2) 임 무

(가) 정보전파 및 주민통제·대피 유도

(나) 군·예비군·유관기관의 화생방작전 지원 및 협조

(다) 필요 시 오염지역 정기/수시탐지 및 측정 실시(지원), 오염포지판 설치

(라) 필요 시 오염인원·장비·물자·지역(시설) 제독 실시(지원)

나. 방독면 보급 및 관리

(1) 방독면 보급 : 지역민방위대원 국비지원(30%) 보급

(가) 보급목표 : 지역민방위대원은 80% 수준으로 보급

직장민방위대원은 전체 인원대상 보급

(나) 방독면 보급현황(보급계획 포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 수	840	653	700	5,000	5,000

※ 연도별 사업비 편성에 따라 향후 보급계획 변동 가능

※ 2016년도 사업비 25,900천원(국 7,770천원, 시 9,065천원, 구 9,065천원)

(2) 방독면 관리

(가) 시효경과 방독면에 대한 정기 성능검사 (년 1회)

(나)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성능 부적합 제품 폐기

다. 화재방 시설장비 확충 · 관리

(1) 화재방 방호시설 확충

(가) 표준설계 및 감리감독은 관련전문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군화생방방호 사령부) 자문 및 감수를 받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

(나) 화재방 방호시설(설비)은 성능시험을 거친 인증 또는 품질보증제품 설치

(2) 화재방 방호시설 관리 : 관리기관 수시점검 및 전문기관 정기점검

(3) 화재방분대 장비(기술지원대 7종, 직장대 5종) 관리

: 확보기준에 맞게 분대장비 확보, 유효기간 경과 시 폐기

※ 화재방분대 장비 소요량

기술지원대 (1개대 20명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의(1벌/인), 탐지지(2개/대), 오염표지판(8세트/대), 휴대용제독기(6대/대), 제독용액(12통,6대*2통), 해독제(1개/탐지반원), 제독키트(1개/제독반원)
직장대 (1개대 10명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의(1벌/인), 탐지지(1개/대), 오염표지판(4세트/대), 휴대용제독기(3대/대), 제독용액(6통,3대*2통),

5.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개 요 》

○ 검열목적

- 평소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등 민방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운영실태 검열을 통해 비상시 인적·물적자원 동원준비태세 유지
- 지역, 직장민방위대 대비태세 실질적 운영 강화

○ 검열구분 : 특별검열, 정기검열

- [특별검열] 필요시 국민안전처장관, 시장
- [정기검열] 구청장

가. 매년 민방위대 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검열 추진 ... 구청장

- (1) 정기검열계획 수립 ... 2016. 2. 15일까지
- (2) 정기검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말까지 실시

나. 필요시 특별검열 실시 ... 국민안전처장관, 시장

- (1) 정기검열 실시결과 운영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
- (2) 민방위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검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민방위대 운영 및 준비태세 검열 우수 민방위대 인센티브 확대추진

- (1) 우수 민방위대 운영사례 전파 및 선도 민방위대로 육성
 - ※ 미흡 민방위대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및 재검열 실시
- (2) 검열 우수 민방위대는 차년도 검열 제외

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추진

□ 검열 절차

○ 자체 검열계획 수립

- 검열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실정에 맞게 (자율)결정

○ 검열단 편성 및 교육

- 검열단 편성 : 단장(자치행정과장), 검열관(민방위담당)

- 검열단 사전교육 : 단장 책임 하 검열관 수칙, 방법, 검열항목 등 교육 실시

○ 검열 실시 및 일정 통보(구 → 지역·직장민방위대장)

- 비상소집 등 동원태세평가는 가능한 비상소집 훈련기간에 이행

- 자치구별로 검열일정을 사전 통보, 검열에 차질 없도록 조치

□ 검열 실시요령

구 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검열주관	자치구	자치구 (필요시 시와 협조 실시)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직장대는 시에서 실시, 그 외에 자치구에서 실시
검열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열목적, 선정, 검열방법 설명 및 현황 청취 ▫ 자료조사 및 분석 [필요시 자체 감사부서 활용] ▫ 평정요소별 점검 ▫ 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 강 평 	
검열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열 결과보고서 작성 ▫ 검열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지시정 지시 ▫ 위법·부당한 처리한 사항은 해당기관에게 개선 또는 시정 지시 	

6.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 개 요 》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체계도



○ 민방위 경보단말(사이렌) 설치현황

구 분	민방위경보시스템	민방위경보사이렌
시설수	1식 (서울종합방재센터 內 경보상황실)	8대

※ 경보전달 가청률 100 %

가.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고도화 및 기능 보강

- (1) 군의 낙하지점 예측능력 향상에 따른 경보발령지역을 현행 방공 경보구역(시·도)에서 동 단위로 세분화 운영방안 검토 추진
- (2) 24시간 365일 상시운영 유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노후 민방위 경보통제장비 교체 및 보강 추진으로 경보단말 성능개선 및 안정적인 경보시스템 상태유지
- (3) 민방위경보망 보안대책 강화를 위해 실시간 침입탐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추진, 보안 취약점 사전예방 및 제거

나.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발령·전달체계 확립

(1) 민방위경보 신호표

경보구분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경보종류 전달장비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라디오	경계경보 발령	공습경보 발령	화생방 경보발령	경계공습 화생방 경보해제	경계경보 발령	위험경보 발령	경계위험 경보해제
T V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이동멀티 미디어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문자방송
사이렌 (민방위 경보단말)	평탄음 (1분간취명)	파상음 ~~~~~ (3분간취명)	화생방 경보방송		재해경계 경보방송	평탄음 (5초간격15초씩 10회취명)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반복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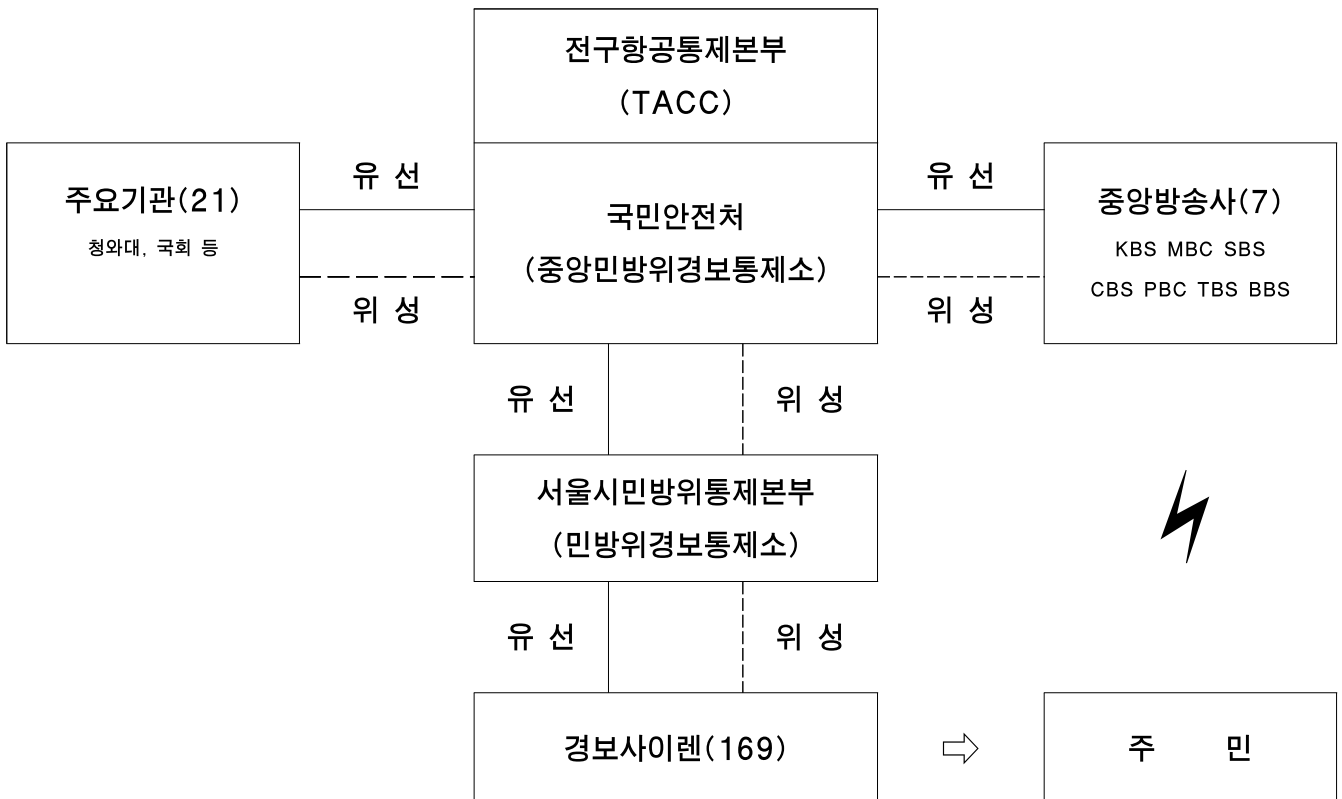
(2) 민방위 경보방송 전달체계 확대추진

※ 공중과 방송 외 다양한 유료방송(유선방송, IPTV, 위성방송) 확대추진

다. 민방위경보 담당자 교육·훈련 강화 및 유지관리 철저

- (1) 중앙, 시·도, 시·군·구 경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내실화
 -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직무기술교육 실시(년 2회 이상)
- (2) 유관기관 간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훈련 정기적(월 1회) 실시
 - ※ 적 항공기,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민방공 경보발령 합동훈련 실시
- (3) 민방위경보시설 점검·정비 강화를 위한 24시간 경보전달태세 확립

참 고 민방위 경보전달 체계도



7. 주민신고체계 확립

《 개 요 》

○ 목 적

- 민방위·통합방위사태 및 각종 재난·환경오염·범죄요인 등에 대한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의식을 갖춘 모범신고인을 지정·계도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

○ 주민신고망 현황

[단위 : 명, 2015. 10. 31.기준]

총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1,025	456	47	231	291

가. 주민신고망 현황관리 철저

- (1) 지역특성에 맞는 신고망 구성, 적정신고자 발굴·위촉 관리
- (2) 정비기간 : 정기(6월, 11월), 수시(소요가 있을 시)
- (3) 평시 신고원 관리 강화 : 교육·훈련 실시, 활동실적 점검 등

나. 주민신고 홍보활동 강화 및 신고의식 고취

- (1) 주민신고요원, 사회봉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각급 지역단위별로 주민신고의식 확산운동 전개
- (2) 각종 방송, 언론매체, 유선방송 등을 통한 주민신고 홍보
- (3) 주민간담회, 반상회 개최 시 주민신고 계도
- (4)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홍보방송 및 전광판 자막이용 홍보

다. 주민신고 접수·처리체계 확립

(1)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 (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강화
- (나) 신고망도 및 신고원 명단 비치, 활용
- (다) 행정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사항 종합과약 관리
 - ※ 동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비치·관리
- (라)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처리결과 통보

(2) 주민신고망 운영실적 관리

[단위 : 건, 명, 2015. 10. 31.기준]

구 분	주요신고대상	접수건수	신고자	
			요원	그외
환경·교통	생활쓰레기투기, 공장폐수, 산업쓰레기방치, 교통범법행위 등	4,298	2,556	1,742
보건·위생	전염병발생, 무허가영업,接客업소 미성년자 고용, 불량식품 등	26	21	5
건설·녹지	무허가건축행위, 무단형질변경, 불법임야훼손, 공사장안전방치 등	50	38	12
안전사고	위험축대, 담장, 교량, 도로, 옹벽, 건축물 등	244	149	95
대단위재난	산불, 화재(전기·가스 등), 폭발 등	7	4	3
안보및안녕질서	거동수상자, 범법자, 사회혼란야기자 등	-	-	-

라. 주민신고 인센티브 강구

- (1) 상금 지급 : 간첩신고 (근거 :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 (2) 표창 실시 : 군·경 등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장관상 추천 등
- (3) 사기진작방안 강구 : 간담회, 단합행사 및 모범지역 견학지원 등

IV. 민방위사태 시 조치

1. 민방위대 동원태세 확립

가. 민방위대 동원매뉴얼 정비

- (1) 통합방위사태, 재난사태 등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를 대비하여 민방위대 동원매뉴얼 정비
- (2) 민방위사태에 따른 동원발령 시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 (3) 민방위대원 교육 시 동원중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

나. 동원사태대비 인적·물적 관리

- (1) 민방위 동원자원을 현행화하고, 민방위대원의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DB로 구축하여 상시적 비상연락망 유지
 - ※ 민방위대장을 통해 수시점검하여 관리토록 조치
- (2) 동원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유지
 - ※ 민방위대장 ⇨ 동장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
- (3) 동원권 발령을 위해 민방위협의회를 개최하여 동원규모, 민방위대원의 임무 및 역할 심의(긴급 시 협의회 생략 가능)
- (4) 동원사태 발생 시 민방위 동원권자는 통제소를 설치하여 민방위대별 지휘·통제를 실시하고 동원해제 시까지 대원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다. 동원 민방위대원의 보상·치료 및 실비보상

(1) 보상 및 치료

-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자와 사망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치료

(2) 재해 등 보상

-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자 또는 사망자는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은 휴업보상금 지급

(3) 실비변상 등

- (가)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급식과 실비(식비·숙박료·교통비) 지급
- (나) 중장비 등의 기계·기구를 동원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참 고 1

동원단계별 처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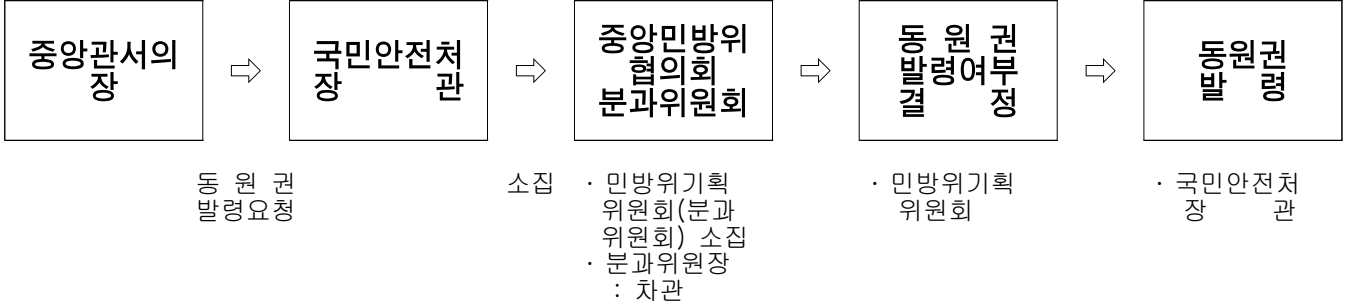
단 계 별	처 리 기 관	처 리 내 용	비고
① 동원요건	(법 제26조제1항)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규칙 제41조)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② 민방위사태 발생보고	시·군·구	▫ 시·군·구 ⇨ 시·도 ⇨ 국민안전처장관	
③ 동원권자의 동원요인진단 (법 제9조) (시행규칙 제41조)	국민안전처 (시행령 제3조)	▫ 동원권 발령여부 판단(협의회 심의) ▫ 동원권 발령 시 중앙민방위협의회 개최 - 동원권 발령여부, 동원규모 등 ※ 긴급 시 협의회 생략가능	
	시·도 시·군·구 (읍·면·동) (시행규칙 제2조)	▫ 동원권 발령여부 판단(협의회 심의) ▫ 동원권 발령 시 지역민방위협의회 개최 -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 동원규모 등 ※ 긴급 시 협의회 생략가능	
④ 동원권 발령 (법 제26조)	국민안전처 시·도 시·군·구	▫ 발령권자 :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긴급 시 읍·면·동장)	
⑤ 동원령 전파 (시행령 제35조)	민방위대장 (통·리)	▫ 전파방법 - 지역방송 및 마을방송, 사이렌 등 - 비상연락망 및 동원명령통지서에 의한 개별전달 ▫ 전달체계 : 발령권자 ⇨ 읍·면·동장 ⇨ 지역민방위대장 ⇨ 대원	

단 계 별	처 리 기 관	처 리 내 용	비고
⑥ 사태수습 통제지휘소 설치·운영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태수습 통제 및 지휘, 민방위대별 임무부여 ▫ 동원인력 보강여부 판단 및 요청 (통제지휘단장 ⇨ 동원권 발령자) ▫ 자재, 장비, 취사 등 지원 ▫ 부상자 가료 및 후송, 이재민 긴급구호 등 종합대책마련 ▫ 인근 민방위대 응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 건 : 사태 급박 및 수습능력 부족 - 범 위 : 동원권자 관할지역 범위 내 - 요청경로 : 통제단장(민방위대장) ⇨ 인근지역 민방위대장 - 절 차 : 구두(사후 서면 제출) - 응원을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읍·면·동장(시·군·구청장)에게 보고 	
⑦ 동원집결지	통제지휘소 (읍·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소인원 점검 : 지역민방위대장 → 읍·면·동장에게 보고 ▫ 대원별 임무부여 및 민방위 장비 배부 ▫ 대원의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교육 ▫ 미 응소대원에 대한 동원명령통지서 전달 	
⑧ 대원임무수행	민방위대장 및 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원 단독행동을 자제하고 2~3인 이상 집단활동 ▫ 통제지휘소(본부)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임무수행 중 특이사항 즉시보고 	
⑨ 의료기관지정 및 사상자 후송	동원권자 통제지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인근 의료기관 후송 ▫ 의료기관 지정 : 부상자 가료 신청 ⇨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의료기관) ▫ 부상자(또는 유가족)에게 보상 또는 가료 신청 안내 	
⑩ 사상자 파악보고	민방위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대상 : 동원활동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보고체계 : 민방위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국민안전처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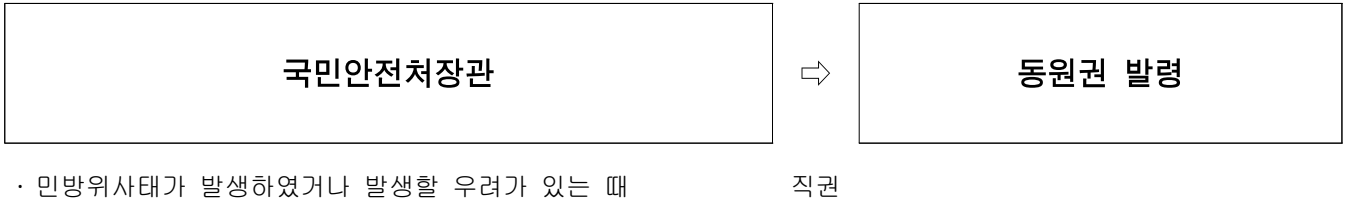
참 고 2

동원 발령권자별 동원절차

□ 중앙관서의 장의 동원발령 요청에 의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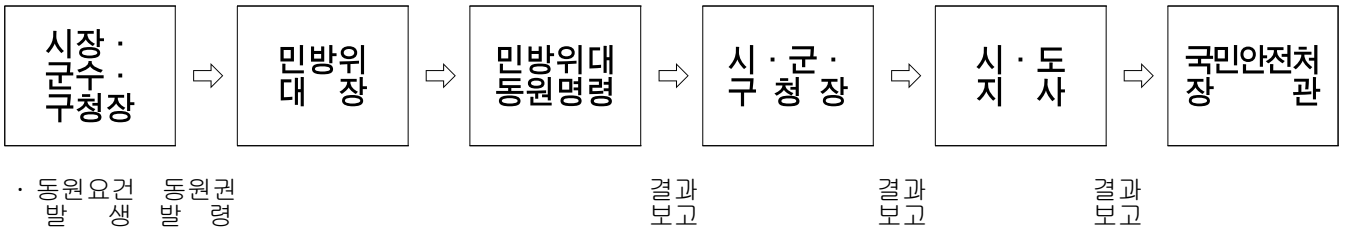
□ 직권으로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 시·도지사가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 민방위기술폰대



□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 직장민방위대



□ 읍·면·동장이 동원권을 발령하는 경우 ... 응급조치의 경우만 가능



2. 응급의료 지원대책

가. 위기상황전제

- 대규모 재난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사고발생시점부터 사고 수습종료 시까지 현장응급의료지원 등의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나. 조치방향

- (1) 대규모 사상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 및 이송으로 인명손실 최소화
- (2)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과 인력을 편성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인원과 장비를 투입
- (3) 의료활동 요구의 폭발적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4) 재난에 관여된 긴급구조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통일된 지침과 지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가의 재난관리체계의 효과를 증대

다.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전파체계 유지

- (1) 신속한 상황접수 및 전파체계

구 분	주요내용	해 당 기 관			
1단계	최초신고	일반인 등			
2단계	최초 상황접수	소방, 경찰 등			
3단계	상황파악 및 전파	119 (소방)	⇔	협조 및 정보공유	⇔ 보건의소 (보건소장 및 지역 DMAT 등)
4단계	상황전파 및 보고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협조)	관 내 응급의료기관 및 이송업체	서울시 ↓ 이동응급의료세트 배치기관 ↓ 현장응급의료지원단	관 내 유관기관

(2) 기관별 대응활동

대 응 기 관	주 요 내 용
성 북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상황접수 및 유관기관 협의 지역 재난의료지원단(DMAT) 출동 및 운영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서 울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비상진료대책본부 구성, 운영 관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소방재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규모 사상자 발생 시 상황전파 및 보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체계 가동 및 상황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발생시 지역 DMAT 현장평가에 따라 응급의료지원 대규모 재난발생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 및 현장응급의료지원단 파견 각종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제공
응급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각종 응급의료정보 실시간 제공 및 현장응급의료 제공

라. 재난유형에 따른 응급의료지원반 운영체계 구축

사 고 규 모	세 부 기 준	조 치 사 항
[소규모] 사상자50명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지역 자체 의료지원이 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보건소 상황관리 지역 DMAT 출동 및 현장평가 필요시 현장의료지원 실시
[중규모] 사상자50명이상 ~100명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지역 및 인근지역의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에서 상황관리 시단위 DMAT 출동 서울시 1/2 DMAT 출동
[대규모] 사상자100명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지역 자체의 의료지원만으로 부족하고, 인근지역의 지원 및 국가차원의 의료지원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에서 상황관리 시단위 DMAT 출동 서울시 전체 79팀 DMAT 출동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일 경우 대비 사상자의 수, 인명피해 확대 가능성, 현장수습 소요시간 등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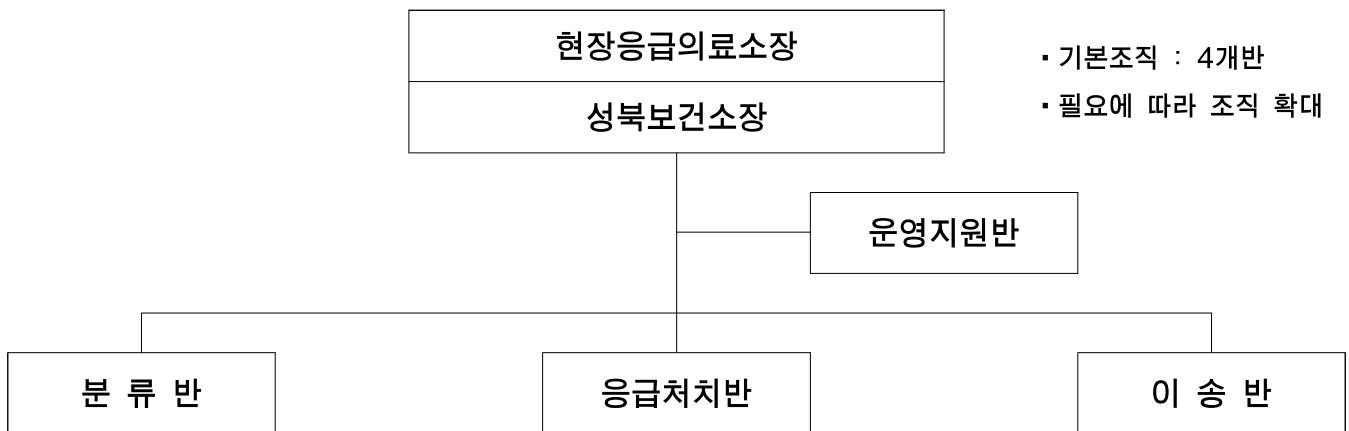
마.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업무수행절차

(1) 현장응급의료소 조직체계

(가) 현장응급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의 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서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

- 1) 사고의 성격, 규모, 발생 가능한 위험, 환자의 상태와 숫자 파악
- 2) 의료활동 지휘, 필요할 경우 증원 요청
- 3) 재난현장에서 이송까지 모든 의료행위에 의료진의 활동 등 소방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나) 현장응급의료소 기구도



(다) 반별 인원편성

구분	합계	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	운영지원반
계	18	2	8	5	3
의사	5	1	3	1	
간호사	5		4	1	
응급구조사	3		1	1	
무선통신요원	1	1		1	
운전기사	2			1	1
행정·설치요원	2				2

※ 이동응급의료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인력을 지원(인력의 2/3 이상)받아 구성·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인력 증감 가능

(2) 현장응급의료소 반별 임무

반 명	임 무	비 고															
현장응급의료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 사고성격, 종류, 피해지역범위에 따라 의료지원반 인력 적정배치 구조된 사상자 처치를 위해 119구급대, 동원지정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조 																
운영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관리 업무 지원-임시 영안소 업무 지원 중증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이 있는 환자는 중증도분류표 표기사항 모두 기록 처리결과에 따라 귀가 또는 병원으로 이송조치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중증도 분류표 부착 																
분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도 분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자의 생사여부와 소생가능성 판정 모든 사상자들을 최대한 빠르게 평가하여 중증도 분류 중증도 분류방법 <table border="1" data-bbox="328 882 1316 1093"> <thead> <tr> <th>분 류</th> <th>분류색</th> <th>환자의 중증도</th> </tr> </thead> <tbody> <tr> <td>긴급환자</td> <td>적 색</td> <td>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td> </tr> <tr> <td>응급환자</td> <td>황 색</td> <td>수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td> </tr> <tr> <td>비응급환자</td> <td>녹 색</td> <td>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td> </tr> <tr> <td>지연환자</td> <td>흑 색</td> <td>사망하였거나 생존가능성이 없는 환자</td> </tr> </tbody> </table> 중증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이 있는 환자는 중증도분류표 표기사항 모두 기록 처리결과에 따라 귀가 또는 병원으로 이송조치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에 중증도 분류표 부착 	분 류	분류색	환자의 중증도	긴급환자	적 색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	응급환자	황 색	수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비응급환자	녹 색	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	지연환자	흑 색	사망하였거나 생존가능성이 없는 환자	
분 류	분류색	환자의 중증도															
긴급환자	적 색	수분 혹은 수시간 이내의 응급처치를 요하는 환자															
응급환자	황 색	수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비응급환자	녹 색	수시간/수일 후에 치료하여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환자															
지연환자	흑 색	사망하였거나 생존가능성이 없는 환자															
응 급 처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처치구역(긴급, 응급환자, 비응급, 지연) 구분 및 팀별 표지판 설치 환자의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각 팀별 응급처치 실시 현장응급의료소장에게 환자현황 보고 다른 반들과 무선통신체계 유지 																
이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도분류표의 이송기록부문을 처치기록지에 이송원칙 순서대로 이송(긴급→응급→비응급→지연환자)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인근의료기관의 병상정보 및 진료정보 판단하여 이송할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기관 배정 환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이용 이송기록 파악 및 기록 유지 다른 반들과 무선통신체계 유지 이송할 의료기관에 환자의 상태를 간단히 알리고 응급처치내용이 기록된 중증도분류표가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착여부 확인 																
구조구급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재해발생상황을 응급의료정보센터에 통보 및 공조유지 재해진압 및 구조작업, 구급차 동원, 후송 사고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현장응급의료소로 신속 인계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나 사망자 이송로 진·출입로 확보조치 및 현장응급의료소 주변 치안 유지 현장응급의료소장이 통제관을 통하여 요청하는 사항 																

3. 혈액공급 지원대책

가. 위기대응목표

- 혈액원 파업, 헌혈 급감 등 혈액부족사태의 조기징후 및 위기발생 시 원인별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사태수습/조치,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위기 조기극복

나. 위기대응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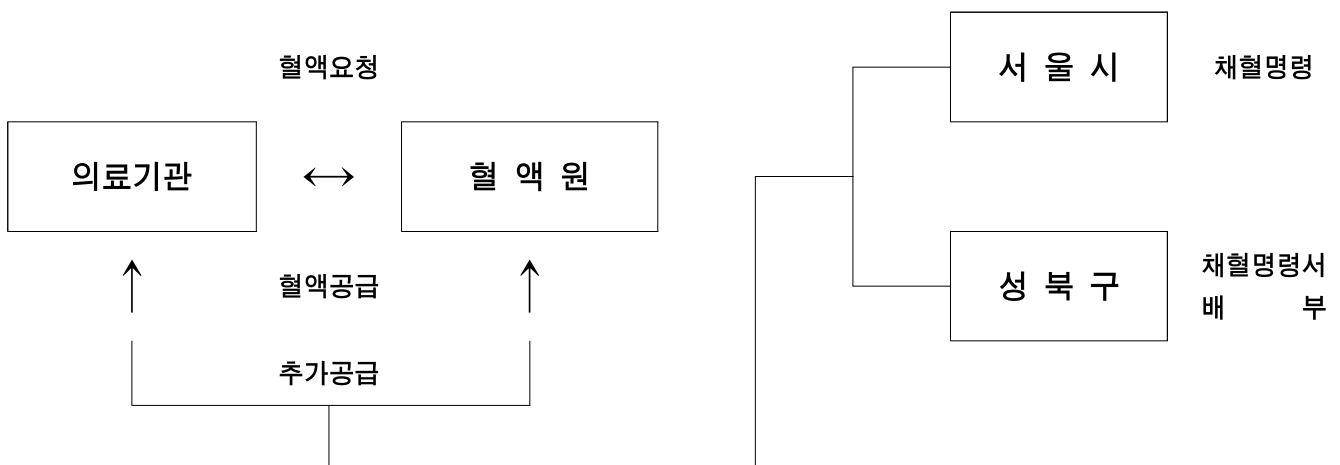
- (1) 혈액공급 장애 위기발생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에 인지 및 대처
- (2) 위기경보 수준별로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양상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위기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
- (3)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혈액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위기 발생 시 채혈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채혈팀 및 공급체계 유지

다. 혈액수급대책

(1) 수급방침

- (가) 중상자에 한하여 사용, 중상자 1인당 4유닛(약 400cc) 수혈
- (나)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하여 비축된 혈액대용제 및 채혈백 철저히 관리
- (다) 혈액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채혈불능자 등을 감안, 소요대비 최소 130% 수준의 채혈명부 관리

(2) 수급체계



(가) 채혈액 현황

[단위 : 유닛, 2015. 10. 31.기준]

소요량	확보량	비고
46,845	48,687	이월 1,918

(나) 혈액원 설치계획

총계	기존혈액원	임시혈액원			비고
		계	병원	보건소	
8	2	6	5	1	

(다) 채혈반 편성, 운영

- 1) 혈액원당 1개반 편성(유사시 종합병원 임시채혈반 증편)
- 2) 편성

구분	인원	구성
고정채혈반	4명	의사 1, 간호사 2, 임상병리사 1
이동채혈반	5명	의사 1, 간호사 2, 임상병리사 1, 운전기사 1

- 3) 지역 내 혈액수요를 신속히 파악하여 해당 혈액원으로 실시간 전파
- 4) 희귀혈액(RH-) 보유현황을 파악, 채혈명령서를 발급하여 희귀혈액 확보

(라) 채혈명령서 배부

- 1) 채혈명령대상자 :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한 국민
(남성 50kg 이상, 여성 45kg 이상)
- 2) 채혈을 하는 혈액원장(임시혈액원장)은 채혈자에게 채혈증서 교부

(마) 채혈 : 혈액원 또는 임시혈액원에서 실시

V. 행정 사항

1. 구청장은

- 서울시 민방위계획에 따라 세부 민방위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
-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2017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보완토록 함

2. 각 동 및 직장대, 관련부서(기관)은

- 본 계획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